

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2503
----------	------

발의연월일 : 2005. 8. 29.

발 의 자 : 정문헌·김기현·강창일
유승민·유기준·안상수
엄호성·정병국·박재완
김양수·안홍준·강혜숙
박찬숙·김부겸·김명주
박승환·이인기·노현송
고경화·배일도·박세환
이윤성·이영호·이근식
신중식·박계동·김재원
김태년·장복심·임채정
이성권·최병국·전여옥
박성범·김문수·김덕룡
유선호·김원웅·신계륜
정의용 의원(40인)

주 문

일본에 정주하는 제일 한국인 및 조선인들은 (이하 “제일한국인 등”이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의 결과로 일본에 정착하

게 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 후손들이다.

재일한국인등은 일본 국민들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반세기 이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오고 있으나,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등은 오랫동안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들은 지방참정권은 국민이 아닌 주민의 권리이며 일본국 헌법과 국제적 인권규약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등은 “영주외국인에 대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 오직 나라의 입법정책에 관한 일이다” 는 내용의 1995년 2월의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등은 현재 일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법률안」 등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일본국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등의 참정권 확보 운동은 일본 안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양국 정부차원은 물론이고

한일의원연맹 등 양국의 의회에서도 재일한국인들의 소망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인들도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광복 60주년과 한·일수교 40주년의 해에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65만 재일한국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의회에 대해,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재일한국인들의 지방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일본국 안에서 재일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처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국 정부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

하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재일한국인등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옹호하며, 이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지함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재일한국인등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에 대해 일본국 의회의 일부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적 응원은 재일한국인등의 지방참정권 확보 운동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앞으로 일본 지방참정권 운동 20여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일본국 의회에 대해 이런 대한민국의 입법 현황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일본국 정부로 하여금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등의 최우선 핵심사업일 뿐만 아

나라, 기본적 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이며 일본국의 역사적으로 올바른 전후처리를 위한 중요 과제임. 나아가 재일한국인등을 위한 지방참정권 보장이 미래의 한·일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